

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39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9년 9월 일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기동감찰 결과 처분요구 반영 및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기능 변화에 따른 조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축제추진위원회 심의 기능(제2조)을 수행 기능으로 변경
-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설치 조항 신설(제10조)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관계법령 : 불임

첨 부 1. 의안전문 1부.
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
3. 관련법령 1부.
4.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.

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심의”를 “수행”으로 한다.

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사무국) ①추진위원회는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추진위원회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
2. 예산의 집행 및 결산
3. 각종 회의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
4. 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 처리 기록
5. 그 밖에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2조(기능)</u>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</u>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2조(기능)</u>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수행</u>한다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0조(사무국)</u> ① <u>추진위원회는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추진위원회와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</u> 2. <u>예산의 집행 및 결산</u> 3. <u>각종 회의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</u> 4. <u>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 처리 기록</u> 5. <u>그 밖에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</u>
<p><u>제10조(기타 운영세칙 제정)</u> (생 략)</p>	<p><u>제11조(기타 운영세칙 제정)</u> (현행과 같음)</p>

[관계법령]

지방자치법

[시행 2009.4.1] [법률 제9577호, 2009.4.1, 일부개정]

제9조 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5.17>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 - 가.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·위치 및 구역의 조정
 - 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 - 다. 산하(산하) 행정기관의 조직관리
 - 라.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·감독
 - 마. 소속 공무원의 인사·후생복지 및 교육
 - 바.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
 - 사. 예산의 편성·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
 - 아. 행정장비관리,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
 - 자. 공유재산관리(공유재산관리)
 - 차.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
 - 카.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

[타자치단체 관련조례]

상주시 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

(제정) 2007.10.05 조례 제 624호

(일부개정) 2008.07.21 조례 제 656호

(일부개정) 2008.11.12 조례 제 665호 (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상주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개최하는 동화나라상주, 이야기축제(이하 "축제"라 한다)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동화나라축제추진위원회(이하 "추진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8.7.21)

제2조(기능)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축제 프로그램 개발
2. 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
3. 축제와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
4. 그 밖에 축제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추진위원장"이라 한다)과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위원(이하 "추진위원"이라 한다)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, 주민생활지원국장, 농림건설국장, 기획예산담당관, 축제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08.11.12)

1. 시의회 의원
 2. 문화예술 전문가 및 사회·봉사 단체 대표
 3. 관광·문화·예술·체육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4. 그 밖에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
- ④ 추진위원회에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⑤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

분과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위원장이 정한다.

⑥ 추진위원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고문 및 자문위원) ① 제3조제4항에 따른 고문은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추대하고, 자문위원은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고문과 자문위원은 축제 추진에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사무국) ① 제3조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사무국장은 추진위원 또는 민간인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임면한다. (개정 2008.7.21)

② 사무국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사무국은 그에 축제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.

1. 추진위원회와 제3조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
2. 예산의 집행 및 결산
3. 각종 회의시 안전 및 회의록 작성
4. 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기록
5. 그 밖에 축제추진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추진위원의 임기) ① 추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기관·단체의 현직위로 인해 위촉된 추진위원·고문·자문위원은 해당 직위를 면할 경우 후임자가 승계한다.

제7조(추진위원장의 직무) ① 추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.

1. 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의 집행
2.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과 해촉
3.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의 임면에 관한사항
4. 예산의 집행에 관한사항
5. 그 밖에 축제추진에 관한사항 등

② 추진위원장은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을 부위원장이 집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 부위원장은 추진위원장은 보좌하며, 추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

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추진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
2.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3.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9조(위원의 권리와 의무) ① 추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1. 회의 참석 및 발언권
2. 안건에 관한 의결권
3.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

② 고문, 자문위원은 추진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.

③ 추진위원, 고문, 자문위원은 본 위원회로 인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발언권 및 의결권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10조(회의)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추진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.

③ 회의의 소집은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히 소집하는 회의는 구두 또는 통신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다.

제11조(간사 및 서기) 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시 소속 축제업무담당자 중에서 추진위원장이 선임한다.

제12조(수입) ① 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
2. 공공단체의 지원금
3.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지정기탁금
4. 그 밖에 수익금 및 잡수입

② 수입금은 추진위원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(예산의 집행) ① 추진위원회의 수입과 지출은 추진위원장의 권한에 속한다.

② 수입과 지출은 수입·지출결의서 및 영수 등에 관하여는 「지방재정법」 및 시 재무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③ 추진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
제14조(지출원) ①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출원을 두되, 지출원은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.

- ② 추진위원장은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자금의 일부나 전부를 지출원에게 미리 지급하여 그 자금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지출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 -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출원의 지출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- 제15조(수당 및 여비)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상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평가 및 결산) 추진위원장은 시장에게 매년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의 결산 결과를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행사 지원경비) 시장은 축제와 관련된 연구용역 조사나 그 밖에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규정)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축제관련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<조례 제0656호, 2008.7.2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) <조례 제665호, 2008.11.12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생략>

제2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·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<생략>

제천시 공고 제 2009 - 952 호

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09. 7. 6.

제 천 시 장

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1. 조례명 :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2. 개정이유

-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기능 변화에 따라 조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축제추진위원회 심의 기능(제2조)을 수행 기능으로 변경
- 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설치 조항 신설(제10조)

4. 의견서 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09년 7월 26일 까지 제천시장(참조 문화관광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641-5124, FAX 641-5149, 담당자 : 임명규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- 기타 참고 사항 등

★지방행정주 사보	축제영상팀장	문화관광과장			
임명규	이영일	전결 07/31 김동석			
지방교환원8급		주순애			

조례(안) 입법예고 결과보고서

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1. 조례명 : 제천시 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2. 공고번호 : 제천시 공고 제2009-952호
3. 공고기간 : 2009. 7. 6. ~ 7. 26.
4. 공고매체 :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(입법예고)
5. 공고내용 : 개정 조례안
6. 공고결과 : 홈페이지 조회 68회 / 의견제시 0건

2009. 7. 30.

보고자 : 행정7급 임명규

제천시장 귀하